

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10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10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충북의 21C를 대비한 장기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청풍장학회를 설립하였으나 농협도본부의 출연금만으로는 기금조성의 한계로 장학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.
- 따라서 본 장학회의 효율적 육성과 기금조성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추진코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장학회 설치 및 운영근거 규정(제2조-제5조)
 - 명칭 및 소재지는 재단법인 청풍장학회로 하고 청주시 소재로 함.
 - 재산은 정관으로 정함.
 - 정관제정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임원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.

○ 장학사업 내용 및 수혜대상(제6조-제7조)

- 장학생 선발·지급·기금 및 관리·기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으로 함.
- 수혜대상은 충청도민의 자녀(대학생)로 하고 선발·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장학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.

○ 장학회 지원 및 관리(제8조-제12조)

- 도지사는 예산범위내에서 재산을 출연 및 관리토록 함.
- 매년 예산관련 사항과 장학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함.

○ 기타사항(제13조-제15조)

- 준용규정 : 관계법령과 정관준용
- 운영규정 : 장학회운영 규정으로 정함
- 규 칙 :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- 부 칙 :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청풍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도민의 자녀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풍장학회를 설치·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장학회 명칭을 청풍장학회로 하고,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, 장학기금 조성관 리, 기타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하였으며
-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는 도민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였고, 장학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도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또한 장학회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운영에 있어서도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본 조례안은 도민의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청풍장학회 사업이 운영 되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의 장학회 운영에 대한 재산출연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첨 부

-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(안)